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교육지 1호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20년 4월 2일(목) | www.nodong.org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 02-2670-913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400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경향신문사의 1면은 많은 노동자, 시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는 제목은 중대재해 중 주요 5대 사고(떨어짐, 끼임, 깔림, 뒤집힘, 부딪힘, 물체에 맞음)로 사망한 노동자 1200명의 기록과 함께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늘도 3명’ 통계는 주요 5대 사고사망 통계입니다.

넘어짐, 무너짐, 화재폭발 등의 사고성 사망 재해와 중금속 중독, 뇌심혈관계질환 같은 직업성 질병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대한민국은 해마다 약 2천4백명의 노동자가 출근 뒤 퇴근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하루 6명에서 7명 꼴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순위 10위권 나라이지만, 수년째 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그늘 속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은 죽음의 현장,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기업은 이윤을 챙겼지만 그에 걸맞는 책임은 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산재로 수십 명이 사망해도 기업이나 기업의 책임자가 처벌받는 일은 매우 드물고, 처벌이 있다 해도 그 수준이 매우 경미해 솥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2013년 1월, 성수역 4번 승강장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30대 노동자가 회송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당시 원청인 서울메트로와 하청인 은성PSD는 말할 수 없는 죽은 자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결국 원하청 무혐의, 형사처벌 0명, 산안법 위반 벌금으로 단돈 30만원을 은성PSD에게 물렸을 뿐입니다. 지하철 운행 중인 낮 2시에 혼자 일하다 재해가 발생했지만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던 원청과 하청에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 다. 결과는 제2, 제3의 스크린 도어 산재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2015년 8월 강남역에서 20대 노동자가 스크린 도어 수리 중 전동차 사이에 끼여 사망했습니다. 이 사망재해의 판결은 원청 서울메트로 무죄, 협력업체 대표 벌금형이었습니다. 2016년 5월 구의역 김군(19살,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이 발생합니다. 사고유형, 원인 모두 지난 사망재해와 같았습니다.

시설·장비 소유 관리하는 원청, 산재사망은 나 몰라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사고가 반복되는 일은 대한민국에서 허다합니다. 김용균 사망 이전, 8년간 11명의 산재사망이 있었던 태안화력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처벌은 고사하고 오히려 5년간 무재해 사업장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청 산재사망을 원청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서부발전의 끝없는 무책임은 2018년 12월 청년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의 사망을 계기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대기업, 공공기관의 반복되는 산재사망, 기업 규모, 책임에 맞는 처벌은 없어

2017년 노동절에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타워크레인 충돌로 6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지만 법원(2심)은 삼성중공업에 벌금 3백만원을 내렸을 뿐입니다. 울산 한화케미칼은 2015년 공장 폭발사고로 6명의 하청노동자 사망재해에 벌금 1천5백만원을 부과받았을 뿐이고 실형선고는 하급관리자에게만 내려졌습니다.(2심에서 집행유예)

2013년 아르곤가스누출사고로 5명의 노동자를 사망케한 당진 현대제철에는 벌금 5천만원,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는 법인, 고위 임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1년 4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이마트 냉매가스 질식사에는 단돈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을 뿐입니다. 삼성중공업, 대우건설, 현대중공업, 대림산

업, 한화케미칼, 이마트 등 주요 대기업들과 지하철, 철도, 한국전력, 발전소 등 공공기관들은 반복되는 산재사망의 현장이지만 해당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사망재해에 합당한 처벌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사망재해가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음에도(아래 표) 원청인 이들 대기업, 공공기관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많습니다.



기업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관리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산안법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현행 산안법은 법이 정한 구체적 행위 위반자를 처벌하기 때문에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가진 최종 책임자나 기업(법인)이 처벌받는 사례가 매우 드뭅니다.

2015년 주요 30개 기업의 중대재해 사망자의 95%가 하청노동자였지만 원청 책임자가 구속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원청이 시설이나 장비를 소유, 관리하면서도 하청노동자

발생연도	사고현장	사망자수*	사고원인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	1명	혼자 석탄운송설비 점검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
2017 5월	삼성중공업	6명	크레인 충돌사고로 임시 줄연실에 있던 하청노동자 6명 사망
2016 5월	구의역	1명	혼자 스크린 도어 수리 작업 중 열차에 끼여 사망
2016 6월	남양주 지하철	4명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로 4명 사망
2016	대우건설	8명	건설현장에서 떨어짐, 끼임, 질식사 등으로 한 해 8명 사망
2016	현대중공업	7명	조선소, 계발사 사업장에서 떨어짐, 미끄러짐 등으로 7명 사망
2015 7월	한화케미칼	6명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증설공사 중 폭발사고로 6명 사망
2013 3월	대림산업	6명	여수산단 대림산업 공장 폭발사고로 6명 사망

*모두 하청노동자

가 일하다 사망했을 때는 책임지지 않는 현실

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목적은 기업의 조직문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 등으로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죽음의 행렬을 멈추자

년도	산재(명)	산재사망(명)
2018	102,305	2,415
2017	89,848	2,209
2016	90,656	2,040
2015	90,129	2,066
2014	90,909	2,134
2013	91,824	2,233
2012	92,256	2,165
2011	93,292	2,114
2010	98,645	2,200
2009	97,821	2,181
2008	95,806	2,422
2007	90,147	2,406
2006	89,910	2,453
2005	85,411	2,493
2004	88,874	2,825
2003	94,924	2,923
2002	81,911	2,605
2001	81,434	2,748
합계	1,646,102	42,632
평균	91,450	2,368

지난 20여 년 누적 산재사망 노동자는 4만명이 넘습니다. 해마다 2천명이 넘는 노동자의 죽음에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시설에 하는 투자보다 얼마 되지 않는 벌금을 내는 게 훨씬 이익인데, 과연 어느 기업, 경영책임자, 원청이 직접고용노동자는 물론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현실, 하급관리자만 처벌되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바꾸자는 투쟁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입니다.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관련 정부 책임자들을 처벌함으로써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이 사망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사람이 다치면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기업 처벌 가능? 응, 가능!



과연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서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기업을 위법 행위 주체자로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속한 사람과 연계해 처벌하기 때문에 그 수준이 낮습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일찍부터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기업을 살인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원청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립니다.

2008년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벌금 순위를 보면 1위 기업의 벌금액이 약 227억원 입니다. 건설노동자 40명 사망에 2천만원의 벌금을 부

과한 이천 냉동창고 산재사망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기업처벌 수준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2006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과 영국의 기업 살인법 소개를 시작으로 산재사망 기업 처벌강화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왔습니다. 19대 국회 입법청원 운동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입법발의까지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김용균 투쟁을 거치며 노동, 시민사회의 중대재해 기업 처벌강화 입법요구도 매우 높아졌고, 언론의 관심도 확대되었습니다. 각종 시사 프로그램은 물론 드라마에서도 언급될 정도입니다.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대구 지하철,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산재사망 유가족 등 피해자들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한 공동의 요구로 모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와 같은 흐름과 15년 운동의 성과를 모아 2020년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원년의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와 함께 운동본부를 발족해 입법발의자를 조직하고 순회투쟁,

중대재해기업 처벌 강화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하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 전면 작업중지 산안법 개정
코로나 노동법 제정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집중 집회

2020. 4. 22. 15시 장소 미정

4월에는 이렇게 실천합니다!

- 4월 한달 | 전 조합원 추모 리본-버튼 달기, 사업장 현수막 걸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참여
산안법 현장 이행 점검, 전국 동시다발(4.20~28) 투쟁 참여
- 4월 27일(일) | 코로나19 이슈 토론회
- 4월 28일(월)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원년 선포식
- 4월 하순 | 2020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민주노총

모의법정, 연극, 간담회, 서명운동 등 다양한 대중사업을 전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4월 20일까지 초동 입법발의자를 조직,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4월 2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 제정 투쟁에 돌입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참혹한 죽음의 노동현장을 끝장내기 위해 민주노총 조합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에 힘 있게 결합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자 참여 문의

☎ | 02. 2670. 9136 / 9137

mail | kctu.ohs@gamil.com